국가비상사태 시행령(NO.5/2021) 국가 존립 및 주권에 대한 위협 대응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시행령

(※ 주요 내용 번역)

대내외 적들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정부의 법적 의무 및 도덕적책임인바,

테러리스트 TPLF와 그 연합세력이 국가의 존립 및 주권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바,

테러리스트 TPLF와 그 연합세력이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사살, 약탈 및 여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공격의 중대성을 고려하여,

민간인 가운데 거주하며 TPLF와 그 연합세력의 첩보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함을 인지하며,

테러리스트 TPLF가 에티오피아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려는 열망을 가진 외국세력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,

상기 언급한, 평시의 법집행 메커니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시행이 필요해진바,

그러므로 이제,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헌법 제93조(1)항 (a)에 따라, 아래와 같이 선포함.

(※ 제1부 용어 정의, 적용범위 등 일반사항 생략)

제2부

긴급조치 및 금지되는 행위

4. 국가비상사태 조치

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가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보호하고 민간인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,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:

- 1) 국내 어느 지역이든 평화·안보 유지를 위해 군대 또는 여타 보안군을 배치하도록 명령
- 2) 군복무 적령기인 국민과 총기 소지자에게 군사훈련을 받거나, 군사임무 명령을 따르거나, 혹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무기를 인도하도록 명령
- 3) 통행금지 시행
- 4) 모든 통신 및 대중교통 수단을 폐쇄하거나 중단
- 5) 테러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, 법원 영장 없이 체포하고, 동 시행령 시행기간동안 그러한 사람을 구금하거나 법률에 따라 동일한 책임을 추궁
- 6) 테러단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가택, 체류지 및 차량을 수색하고, 검색 및 신원 확인을 위해 정지시키고, 총기를 압수
- 7)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도로 차단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폐쇄 명령, 또는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명령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출입하거나 대피하는 것 을 금지
- 8) 국가의 심각한 안보 위협과 문제가 있는 지역의 경우, 지방 행정 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지하거나, 행정 관리급들을 민간 또는 군사 관리자로 변경 또는 교체
- 9) 테러단체에 직·간접적, 정신적, 물질적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사회 단체 의 면허정지 또는 영구 취소를 관련 규제 당국에 명령
- 10) 테러단체에 직·간접적, 정신적, 물질적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이나 언론 인의 면허정지 또는 영구 취소를 관련 규제 당국에 명령

6. 의무 및 금지 행위

- 1) 모든 사람은 동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의 지시 및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.
- 2)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의 활동 및 동 시행령 취지에 반하는 행위, 테러단체의 목 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테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는 행위, 민간인을 위협하는 모든 표현이 금지됨.
- 3) 테러단체에 금전적, 정보, 물질적, 정신적 등 모든 형태의 직·간접적인 지원 제공 이 금지됨.
- 4)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 또는 이외의 권한 위임자의 허가 없는 시위 또는 공개 집회 개최가 금지됨.
- 5) 에티오피아 연방군 및 연방경찰 또는 여타 관련 치안기관의 허가 없는 총기류를 소지하고 이동하는 행위가 금지됨.

- 6) 신분증, 운전면허증, 사원증, 여권 또는 유사한 형태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를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며, 신분증 미소지자는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 지침에 따라 인근 Kebele 및 Woreda 치안행정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2주 내에 임시 신분증 발급받아야 함.
- 7) 필수 서비스 및 생산 분야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경제활동 저해행위는 금지됨.
- 8) 동 시행령 하 불법적 이익을 얻기 위한 권력 남용, 합리적인 의심 없이 개인을 구 금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권력남용 행위 가담이 금지됨.
- (※ 제3부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 운영사항 생략)

제4부

기타 조항

8. 효력 정지 법률

- 1) 사법기관은 동 시행령이 만료될 때까지 동 시행령에 시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 않음.
- 2) 동 시행령은 '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'에 명시된 외교특권을 침해하지 않으나, 동 시행령과 상반되는 실체법·절차법은 시행령 발효 기간 동안 중단됨.

9. 형사책임

- 1) 동 시행령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발표된 지침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3년의 단순 금고 또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0년 엄격한 징역형이 선고됨.
- 2) 상기 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수반될 경우, 동 처벌도 적용됨.
- 3) 국가비상사태 기간에 발생한 동 시행령 및 그에 따라 발표된 지침에 대한 위반행 위는 국가비상사태 종료 이후라도 평시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수반됨.

10. 지침 발표 권한

- 1) 국가비상사태작전사령부는 동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지침 발표 권한이 있음.
- 2) 상기 1항에 따라 지침 시행 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해야함.

11. 발효일

1) 동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각료회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.

2) 의회(하원)는 6개월 기간 만료 전에 국가비상사태 종료일을 결정할 수 있음. 끝.